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황인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72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 (1명)

찬 성 자 : 전병주, 김 경, 장상기, 최기찬,  
조상호, 채유미, 양민규, 권순선,  
최 선, 김수규, 장인홍, 김화숙,  
이승미, 김제리, 유정희, 최정순,  
김정환, 유 용, 이병도, 고병국  
의원 (20명)

## 1. 제안이유

-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다차원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교육·학예 분야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라. 협력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과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3조).

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와 자원 조성, 용도, 관리 운용,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7조).

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2조).

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남북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 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 교류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경우, 해당사업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 ※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운영 관련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및 제15조(기금의 용도)는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사업비와 기금 출연금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용추계 제외
  -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붙임 참고)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내 용	2019년 사업비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남북교원학생교육교류 추진	남북 공동 역사유적지 상호 방문, 캠프 또는 체험활동, 연수 등 남북 교원학생 공동교육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청 업무 외부위탁)	190,000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DMZ 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공동학습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생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청 업무 외부위탁)	50,000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육교류협의체 운영	남북 교육교류를 위한 협의체 운영	10,000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붙임1 ] 조례안 관련 사업비 예산(2019년)

(단위:천원)

구 분	사업명	내 용	2019년 사업비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남북교원학생 교육교류 추진	남북 공동 역사유적지 상호 방문, 캠프 또는 체험활동, 연수 등 남북 교원학생 공동교육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90,000
	<산출근거> · 운영비 - 교육청업무외부위탁 10,000천원 × 19과정 = 190,000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 축과 지원)	DMZ 생태평화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공동학습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 생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000
	<산출근거> · 운영비 - 교육청업무외부위탁 10,000천원 × 5과정 = 50,000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육교류협의체 운영	남북 교육교류를 위한 협의체 운영	10,000
	<산출근거> · 운영비 - 기타운영수당 80천원 × 20명 × 5회 = 8,000천원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경비 20천원 × 20명 × 5회 = 2,000천원		

자료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공

[ 붙임2 ]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예산(2019년)

구 분	사업명	내 용	2019년 사업비
제22조(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를 통한 지방보조자 선정 심의</li> <li>·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운영</li> </ul>	4,200
	<산출근거> · 운영비 -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100천원 × 9명 × 4회 = 3,600천원 - 인쇄비                               5천원 × 30부 × 4회 = 600천원		

자료 :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제공